〈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 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u> <u>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u>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오리지날스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2018046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8.05.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3.11.20]

> > 20 .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48, 3층(방이동, 보명빌딩) 주식회사 오리지날스푼 가맹사업부 Tel: 1644-1038 Fax: 02-516-3203 www.spoonthemarket.co.kr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 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 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4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6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7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2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2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23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24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28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오스푼	외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48, 3층(방이동, 보명빌딩)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			
오리지날스푼	2013.11.20		2013.11.20	송준호	1644-1038 02-516-3			
	법인등록번호	110111	-5272268	사업자등록번:	ই 230-	81-03193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11		오스푼 외 9	서울특별시 송화	파구 올림픽로32길	48, 3층(방이동, 보명빌딩)	
	대표자 (대표이사) 송준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준호	1644-1038	02-516-3203	
6) 6)	송병택	오스푼 외 9	서울특별시 송3	파구 올림픽로32길	48, 3층(방이동, 보명빌딩)	
임원 (사내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준호	1644-1038	02-516-320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오스푼]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오스푼	_
상 호	오스푼 0 0 점	
서비스표	오스폰 Pagnal Shabu & Jim	서비스표 출원번호 : 제40-2018-0010814호 등록번호 : 제40-1421264-0000호
광 고	_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1,763,034	1,690,518	72,516	1,893,089	-92,274	-168,293
2022년	1,593,302	1,600,493	-7,191	1,888,231	-40,973	-79,675
2021년	1,823,437	2,393,021	-569,583	805,903	-103,388	-159,361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영업표지별로 분류하기가 어려워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H N =		-1 -1 A1	사업경력						
一	구분 이름 현 2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관련 임원	송군호	대표이사	2009.10.27.~2013.11.19. (스트로베리호 대표) 2013.11.20.~ 현재 (주식회사 오리지날스푼) 대표이사)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송병택	사내이사	2013.11.20. ~현재	사내이사	내부 관리				
가맹사업	해당								
비관련임원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	· (명)	키이스(由)
시심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2	0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관계 가맹본부	상호/이름 (주)오리지날스푼 / 송준호	구분 가맹사업 경영	기간 2009.10.27.~현재	(등록번호:20130175) 스푼더마켓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20100100205) 사랑탕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20180974) 스푼더스트릿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20180464) 릴렉스라운지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 20210052) 1990 아구찜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 20214069) 분식상회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 20214069) 분시상회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 20214065) 정식상회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 20214066) 일공일 닭곱차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일자 등록 일자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 청자)	상표사 용기간	등록만료일
오스푼	상품,영업표지	2018.01.24 출원	출원번호 : 40-2018-0010814	송준호	1014	2022 11 22
(서비스표권)	사용 대가	2018.11.28. 등록	등록번호 : 40-1421264-0000	70世里	10년	2028.11.28

당사는 상표소유권자인 송준호로부터 상표 사용승락을 득하였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오스푼]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8년 01월 15일



2. [오스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오리지날스푼	오스푼	송준호	2018.01.15.~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48, 3층(방이동, 보명빌딩)

3. [오스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오스푼	대분류	소분류			
	기타외식	소고기 샤브, 해물샤브, 한우샤브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오스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નો <u>ભે</u>	2023.12.31.			2022.12.31.			2021.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_	_	_	_	_	-	_	_	_
서울	_	_	-	_	_	_	_	_	_
부산	_	_	-	_	_	_	_	_	_
대구	_	_	1	_	_	1	_	_	_
인천	_	_	-	_	_	_	_	_	_
광주	_	_	1	1	_	1	_	_	_
대전	_	_	-	_	_	_	_	_	_
울산	_	_	-	_	_	_	_	_	_
세종	_	_	-	_	_	-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_	_	-	_	_	-	_	_	_
충북	_	_	-	_	_	_	_	_	_
충남	_	_	-	_	_	_	_	_	_
전북	_	_	1		_	1	_	_	_
전남	_	_	1	_	_	_	_	_	_
경북	_	_	1	ı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1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오스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0	_	_	_	_	0
2022	0	_	_	_	_	0
2021	0	_	_	_	_	0



6. [오스푼]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오스푼]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어어고기	정보공개서	업종	가:	맹점/직영점의	수
十七	경오/이금	영업표지	등록번호	현중	2023.12.31	2022.12.31	2021.12.31
		스푼더 마켓	20130175	기타 외식	3/0	2/0	3/0
		사랑탕	20100100205	한식	2/2	5/2	1/0
		스푼더 스트릿	20180974	기타 외식	0/0	1/0	1/0
		릴렉스 라운지	20180464	커피	0/0	0/0	0/0
가맹본부	㈜오리지날스푼/ 송준호	1990 아구찜	20210052	한식	14/2	17/2	7/2
		분식상회	20214069	분식	0/0	0/0	0/0
		마라상회	20214067	중식	0/0	0/0	0/0
		정식상회	20214065	한식	0/0	0/0	0/0
		일공일 닭곱차	20214066	한식	0/0	0/0	0/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한 곳이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연간평균 역 2023년 매출액		연간평균 매출액(상한)		연간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u> </u>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	상 한	면적 3.3㎡당	하 한	면적 3.3㎡당	
전체	_	해당없음	-	-	-	_	-	
서울	_	해당없음	_	_	_	_	_	
부산	_	해당없음	-	_	_	-	_	
대구	_	해당없음	1	_	_	_	_	
인천	_	해당없음	1	_	_	_	_	
광주	_	해당없음	ı	_	_	_	_	
대전	_	해당없음	1	_	_	_	_	
울산	_	해당없음	-	_	_	_	_	
세종	_	해당없음	-	_	_	_	_	
경기	_	해당없음	_	_	_	_	_	



강원	-	해당없음	-	_	-	-	-	
충북	-	해당없음	-	_	_	-	-	
충남	_	해당없음	-	-	-	ı	ı	
전북	-	해당없음	-	-	-	ı	ı	
전남	_	해당없음	ı	-	-	1	ı	
경북	_	해당없음	-	-	_	1	ı	
경남	-	해당없음	-	_	-	-	ı	
제주	_	해당없음	_	_	_	-	_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이 없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포스의 매출액]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오스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오스푼]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는 없습니다.

(단위: 개, 일)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_	_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2023년도 [오스푼]과 관련한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 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쪽을 참고하십시오.

그님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덕	· 단위: 천원, 부	ul –		
一		기산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합계						
		소계				
광고	(비공개)	연중				
	_					



		소계		
판촉	-			

11. 가맹금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송파우체국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23	02-405-8777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두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오스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77,970]천원(부가세 포함, 80평 기준 및 별도항목 추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맹비(영업표지 사용 대가)	5,500	_11 ^1 -11 -1	①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 시		
가맹비(자료제공 등 대가)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②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소멸성 비용	
교육비	5,500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보증금	7 000	계약 체결 후 20 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상품대금 미결제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8,5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8,500]
영업표지 사용 등 대가	11,0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80평 기준)

7	'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277,970]				별도항목 추가
필수설비 (정착물) 및 특수설비	주방설비/ 집기/ 특수설비	가맹본부	70,400	880	계약에 의함	설치 전 계약 취소	주방설비/집기/ 특수설비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실내 공사	가맹본부	154,440	1930	계약에 의함	공사 전 계약 취소	목공사,조명,전기,도장, 미장,설비,바닥공사,홀 닥트,타일,족용 등 기본 가구 등 간판 1면 전면 7M /
	간판, 내부장식, POP물 (포함)	가맹본부	33,000	412	계약체결 시		돌출 1.5M 기준 (2층이상 별도 견적)
의!	탁자	가맹본부	13,530	169	계약체결 시	설치 전 계약 취소	80평 기준
오픈)	지원비	가맹본부	6,600	82	계약체결 시	미 이행시	배너, 현수막, 최초 1개월 온라인 마케팅, 명함, 쿠폰, 메뉴판, 회원카드, 유니폼 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시세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시공은 당사가 지정한 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귀하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경우, 도면 설계 및 감리비조로 3.3㎡당 44만원(부가세포함)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가 상권분석과 관련하여 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입지 선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가 최종 의사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사 경영만인드와 부합 할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소지자 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오스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가맹금 분할 납부 :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정기납입경비 (로열티)	가맹본부	월440	익월10일	_	소멸성 비용	CMS 출금 동의 필요 부가세 포함
광고 분담금	_	_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임의 시 행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55/1인당	교육 2일전	교육 미 실시	소멸성 비용	부가세포함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_	23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당 사	연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	-	원·부재료 상품대금지급 기한을 경과 시 부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임의 선정	실비	업체와의 계약에	공사 전 취소	_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간판변경 비용		의함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큰' 8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당사는 2021년도에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 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_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_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11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 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 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오스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당사에 가맹비(자료제공 등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15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에는 손해 배상 외 1일당 금15만원의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보유하는 운영매뉴얼 등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게 반환하여



야 합니다.

- ④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 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첫구 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15일 이내에 채권 · 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오스푼]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고, 주류 관련 통일적 시스템을 위하여 당사가 공급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상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포함)

ΔШ	五口(rlo))	공급가격		7 8
순번	품목(단위)	상한	하한	구분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오스푼]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상품, 용 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특수 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V-4-3)의 메뉴명 외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게프으 파메하 스 어으	가. 상품 공급의 제한 및 중단, 계약 해지 나. 위약금 부과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 주류 관련 통일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가 공급하는 품목만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상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해당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 명	권장가격 (단위: 원)	비고
· 6 日 ・ 6 日 ・ 6	권장가격(원)	
소고기 샤브	평일런치 10,800/디너 및 주말 13,800	_
와규 샤브	평일런치 12,800/디너 및 주말 15,800	_
한우 샤브	평일런치 15,800/디너 및 주말 18,800	_
소고기 편백찜	평일런치 10,800/디너 및 주말 13,800	_
와규 편백찜	평일런치 12,800/디너 및 주말 15,800	_
한우 편백찜	평일런치 15,800/디너 및 주말 18,800	_

※ 월별 홈페이지 공지 또는 당사의 교육직원이 귀하의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화 어쪼 베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소고기샤브샤브 주로 판매하는 업종	오스푼, 스푼더스트릿, 스푼더마켓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를 반경500m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 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	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마	l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_	_	_	_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_	_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오스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 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정기납입경비(로열티) 등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	제6조 제2항
니한 경우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제6조 제2항
못한 경우	제3호 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	제6조 제2항
지 않은 경우	제3호 나목
○ [릴렉스라운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제3호 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	제6조 제2항
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호 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약정해지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유예기간 없이 해지하는 **즉시해지** 2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해지 사유

<귀하가 당사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귀하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오스푼』가맹사업시스템의 명성이나 신뢰가 훼손되어 귀하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1회 이상 당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약정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귀하가 당사의 개점 준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37조 제1항 제1호
2.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의 연체, 정기납입경비(로열티) 2회 이상 연체, 기타 채무불이행의 경	- '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6.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 제37조 제1항 대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TEACHER STOLENGY
3. 당사의 경영지도 시청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제3호 4.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4호 5.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당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제37조 제1항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5호 6.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6호 7.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7호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 제37조 제1항 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8호 9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 제37조 제1항 제9호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3주관 제3주관 제3주관 제3주관 제3주관 제3주관 제3주관 제3주관	우	제2호
### #################################	다가장 권성기도 가기 그리로 시케리가 시니라가나 레마찬 권소	제37조 제1항
4.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4호 5.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당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제5호 제37조 제1항 제5호 6.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6호 7.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7호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 제37조 제1항 내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8호 9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 제37조 제1항를 제휴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5. 당사의 경경시로 시청 조시를 이행하시 아니하기다, 해대한 경구 	제3호
5.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당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제37조 제1항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제5호 6.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7조 제1항제6호 7.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제37조 제1항제7호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게 제37조 제1항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37조 제1항제8호 9.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제37조 제1항를 제휴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제37조 제1항제37조조 제1항제37조	4 다시가 고그윈도 사프사이이 사프 이 파메윈도 거이	제37조 제1항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6.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 제37조 제1항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9.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 제37조 제1항를 제휴하는 경우 지3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4. 청사가 중요하는 성품이되의 성품을 판매하는 경구 	제4호
6.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 제37조 제1항 내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9.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 제37조 제1항	5.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당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제37조 제1항
6.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수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 제37조 제1항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9.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 제37조 제1항를 제휴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5호
제6호 7.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7호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 제37조 제1항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8호 9.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 제37조 제1항를 제휴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요 다시가 그저지 가매져 ㅇ여 ㅈㅎ 가치흐 ㅈ스퀴가 아느 ㅋㅇ	제37조 제1항
7. 당사의 사전 중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제7호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 제37조 제1항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8호 9.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 제37조 제1항를 제휴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0. 경사가 비정면 가경점 단경 구요 시점을 단구하시 많은 경구	제6호
제7호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 제37조 제1항 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8호 9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 제37조 제1항 를 제휴하는 경우 제9호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다기의 기가 스의 여자 여러 이 아트 첫 거의	제37조 제1항
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8호 9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 제37조 제1항 를 제휴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7. 청사의 사진 중한 없이 청합을 경도 안 경구	제7호
9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 제37조 제1항를 제휴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	제37조 제1항
를 제휴하는 경우 제9호 제37조 제1항	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8호
제37조 제1항	9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	제37조 제1항
10 귀하가 가아루•가처분(다수 채궈ㅂ저이 경우 제외) 조세 천난 천분은 바은 경우	를 제휴하는 경우	제9호
	10 긔차가 가아르•가취브(다스 케퀴버저이 겨오 케이) ㅈ세 쳐나 원보으 바오 겨오	제37조 제1항
10. 다이가 가입마 가지만(한민 세천포천단 8 F 세리가, 도세 사람 사단을 받는 8 F 제10호	10. 귀야가 가입규•가서군(단군 재천모선인 경구 세포), 조세 서입 서문을 받은 경구 	제10호
11. 귀하가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일체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1. 긔찼가 보 케야서사에서 저하 이케이 이므로 부이해찼는 겨오	제37조 제1항
11. 귀하가 돈 계약시장에서 정안 될제의 의구를 물어생하는 경구 11호	11. 되어가 쓴 세극시장에서 정면 될세의 의구를 풀어쌓이는 정구	11ই
12.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귀하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제37조 제1항	12.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귀하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제37조 제1항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2) 즉시해지 사유

<귀하가 당사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 1. 당사가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당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 3. 당사가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또는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단, 영업양도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Ċ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Ċ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C	첫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8조 제1항
C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 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계약서 제38조 제1항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상호합의를 한 후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4조 제1호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제44조 제2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여부 회신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위 계약수정사유에 따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항 기판할 판구될 것 ○ 야수이으 다시가 저하 소저이	/가맹심사업사가 서면으로 양도 선정 → 당사 담당 넘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야드이 야수이 가매보브이 야수드 게야 체겨(5이 人ㅇ) →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오스푼]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소고기샤브샤브를 판매하는 관련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오스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30부터 22:00(점포 여건 및 유사업종의 영업시간, 고객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본 계약 체결 시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주 5일 이상 월26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고,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단, 법정 공휴일로 인해 연속적인 휴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해당 없음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전체행사로서의 [오스푼] 브랜드 이미지 제고(상품광고) 또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비용은 당사가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광고의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코 서거	부담	비율	- 분담 절차 비고	
丁七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한참 설사	n) 1/2	
	상품광고(이 미지광고)	50%	50%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70%	30%	_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100%	_		
개별 행사	 	임의 시행: 가면 부담	맹점사업자 전액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판촉활동을 위한 팜플렛·전단·리플렛·카달로그 등의 최초 제작비용 및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써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위약금조로 각 금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③ 귀하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가맹계약서 제39조 제1항내지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금15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3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상품]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당시 최근 3개월 월평균매출의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8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7P~8P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우체국]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오픈준비물 등공사	-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최초상품공급	- 초도물품 공급	D-1(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

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기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이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위생이나 인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라이 공사 비용 (장바잡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하는 알에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기 않는 점포 환경》 전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뷔) → 90일 이내에 기맹본부 부담액을 기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 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호자급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의 끝난 날 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뷔) → 3차 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ਹ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시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오스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메뉴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_	_	_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해당없음	_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_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644-103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spoonthemarket.co.k]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 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⁵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오리지날스푼 (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오리지날스푼 (인)



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본부 보관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20 년 월 일

주식회사 오리지날스푼 (인)



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점 보관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20 년 월 일

주식회사 오리지날스푼 (인)



가맹금 예치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T		
	상호(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T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우체국 014241-01-011759 주식회사 오리지널스푼		
	니 공정화에 관한 법률 _. 성금을 예치해 줄 것을	」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 신청합니다.	성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